

## 의학전문대학원연구위원회세칙

**제1조(목적)** 가천대학교(이하 ‘본교’라 한다) 학칙 제74조에서 정하는 연구위원회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며, 의학전문대학원 교원의 연구지원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구성)** ① 연구위원장(이하 ‘위원장’이라 한다.)은 의학전문대학원 연구부장이 맡으며 당연직 위원으로 의학전문대학원 연구부장보를 임명한다.

② 위원장이 15명 내외의 위원을 위원장이 추천하고 의학전문대학원장이 위촉한다. 위원 중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.

**제3조(기능)**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교원의 연구지원에 관한 사항
2. 연구지원 관련 의견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
3. 연구지원사업의 결과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
4. 연구기자재의 선정 및 구입, 관리
5. 이 규정의 제·개정에 관한 사항
6. 기타 연구 지원에 관한 사항

**제4조(회의)**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② 의결 기준은 위원정수 과반수의 출석과 찬성(위임 포함)으로 의결한다.

부 칙

이 세칙은 2012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.